

#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구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2
----------	------

발의년월일 : 2016년 4월 19일  
발 의 자 : 강구덕 의원(1명)  
찬 성 자 : 남창진, 이상묵, 주찬식,  
박성숙, 이복근, 이석주,  
김희걸, 김용석(서초),  
김제리 의원(9명)

## 1. 제안이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한 때에는”을 “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반경”을 “반지름”으로 하며 “에 불구하고”를 “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고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당해”를 “해당”로 하고 “제반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하며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한 때에는”을 “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 중 “반경”을 “반지름”으로 하고 “에 불구하고”를 “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0조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반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구개발계획의 고시)</p> <p>① 시장은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및 해당 자치구에 비치하여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p> <p>1~2. (생략)</p> <p>3. 지구개발계획의 개요</p> <p>가~라. (생략)</p> <p>마. <u>기타</u> 필요한 사항</p> <p>4. (생략)</p> <p>② (생략)</p> <p>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고시를 <u>한 때에는</u>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및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제20조에 따라 결정·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p>	<p>제6조(지구개발계획의 고시)</p> <p>①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p> <p>가~라. (현행과 같음)</p> <p>마. <u>그 밖에</u> -----</p> <p>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한 경우에는</u> ----- ----- ----- ----- ----- ----- -----.</p>
<p>제7조(토지이용계획의 기준)</p> <p>① 근린주구는 <u>반경이</u> 400미터 이내이고 공동주택의 계획건설세대수는 1,000세대 이상 3,000세대를 기준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수성이나 주변여건(도로구획, 생활권역, 행정</p>	<p>제7조(토지이용계획의 기준)</p> <p>① ----- <u>반지름이</u> ----- ----- ----- ----- -----</p>

<p>구역)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②~④ (생략)</p> <p>⑤ 시장은 지구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준공되어 사용 중인 단지 내에 복리시설 및 주거복합건축물이 있는 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복리시설 및 주거복합건축물의 위치를 분구중심 또는 주구중심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p> <p>②~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p> <p>-----</p> <p>-----</p> <p>----- <u>에도 불구하고</u></p> <p>-----</p> <p>-----</p> <p>-----.</p>
<p>제9조(지구안의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범위)</p> <p>① 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계획하여야 한다.</p> <p>②~④ (생략)</p>	<p>제9조(지구안의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범위)</p> <p>① -----</p> <p>-- <u>범위에서</u> -----.</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건축물의 규모)</p> <p>① 지구안의 건축물의 규모는 별표 3에 따라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세대수 산정시 주구면적은 주거용지와 중심시설 용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지구중심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의 규모·계획내용 및 주변 도시계획 현황과 주거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u>관계법령</u>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제10조(건축물의 규모)</p> <p>① -----</p> <p>-----</p> <p>-----</p> <p>-----</p> <p>-----</p> <p>----- <u>관계 법령</u> -----</p> <p>----- <u>범위에서</u> -----</p> <p>-----.</p>

<p>② 제1항 이외에 지구안의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종 세분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건축물의 배치·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p>	<p>② -----          대해서는 -----          -----          -----          ----- 해당 -----          -----          -----          -----          -----.</p>
<p>제11조(공원의 설치기준)          ① 근린공원은 근린주구당 1개소 이상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민접근성, 주민이용도, 주변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유치거리 500미터 이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린공원 규모 이상의 공원(설치할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녹지면적이 해당 근린주구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공원의 설치기준)          ① -----          -----          -----          ----- 모든 사항 -----          -----          -----          -----          -----          -----          -----          -----.</p>
<p>제14조(개발잔여지에 대한 적용의 특례)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개발잔여지 중 단독</p>	<p>제14조(개발잔여지에 대한 적용의 특례)          ①~② (생략)          ③ -----</p>

주택(다가구주택 포함)에 한하여 인접  
도로여건, 공동개발 가능성 등 개발양  
태를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를 거쳐 별표 4 용도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의 연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한정하여 -----

-----

-----

-----

-----

-----

-----.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안들이 “자구수정”임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강 구 덕